

『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』

《 檢 討 報 告 書 》

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제안이유

- 2005. 6.30 개정된 대통령령 18894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,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복무관련 제도의 준비가 필요하고,
-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지방공무원법 제3조3항의 규정에 따라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우리 구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.

□ 주요내용

- 주40시간 근무제의 실시 (안제13조)
-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(안제15조)
- 특별휴가의 조정(안 제24조)
-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제외 공무원의 범위(안제30조)

□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개정된 지방공무원복무규정,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복무조례 개정지침 및 표준 조례안에 의거 통일적으로 적용된 것이고,
- 관련법규의 개정취지에 부합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.

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5. 12. 5

보고자 : 김 찬 재

# 관 련 법 규

## ○ 지방공무원법

- 제3조(적용범위)③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제57조(政治運動의 금지)①公務員은 政黨 기타 政治團體의 結成에 關여하거나 이에 加入할 수 없다.
- 제58조(집단행위의 금지)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59조(취임규정)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○ 근로기준법

- 제49條(勤勞時間)①1週間の 勤勞時間은 休憩時間을 除하고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.<개정 2003.9.15>
- ②1일의 勤勞時間은 休憩時間을 除하고 8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.

### ※ 시행일 (부칙)

상시 300인 이상 1,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: 2005년 7월 1일

## ○ 지방공무원 복무규정(2005.6.30 일부개정)

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.

재직기간	3월이상 6월미만	6월이상 1년미만	1년이상 2년미만	2년이상 3년미만	3년이상 4년미만	4년이상 5년미만	5년이상 6년미만	6년이상
연가일수	3	6	9	12	14	17	20	21

제8조(공무원의 범위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방의회의원
2.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